

제44조의3(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) ① 삭제 <2020. 6. 17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<[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16., 2016. 1. 7., 2016. 6. 30., 2020. 6. 17., 2020. 12. 29.](#)>

1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
 2. 삭제 <2016. 1. 7.>
 3.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여부
 4.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산정
 5. 법 제47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 여부
 6. 그 밖에 화물운수 통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- ③ 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[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30., 2019. 6. 28., 2022. 9. 30.](#)>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
 2. 한국교통안전공단
-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[개정 2013. 3. 23., 2022. 9. 30.](#)>

[본조신설 2011. 12. 31.]

제44조의4(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③ 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
2. 화물운송서비스의 친절성
3. 화물운송서비스의 대응성
4.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6. 6. 30.]

제6장 사업자단체**제45조(협회의 설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.**

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46조(협회의 정관 기재사항)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